

## 파트 B 절차적 보호 통지

뉴욕주 교육부  
절차적 보호 통지  
2024년 5월

절차적 보호 통지: 미취학 및 취학 연령 장애 학생의 부모를 위한 권리

귀하는 부모로서 뉴욕주 특수교육 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CSE) 또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위원회(Committee on Preschool Special Education, CPSE)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CSE/CPSE는 귀하의 자녀를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권고 사항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귀하는 CSE/CPSE에서 자녀의 특수 교육 요구 사항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논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의 정보는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부모가 특수 교육 절차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하며 자녀가 적절한 무료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인 절차적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절차적 보호 통지 사본은 매년 한 번 및 다음의 경우에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자녀에 대한 평가를 최초 의뢰 시 또는 귀하가 이러한 평가를 요청할 시
- 귀하가 사본을 요청할 시
- 학년도 중 중재 또는 공정 심리에 대한 첫 번째 적법 절차 민원 접수 시
- 귀하가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YSED)에 제출한 주 민원서 사본이 학년도 중 최초로 교육구에 접수될 시
- 징계에 따른 정학 또는 퇴학 조치로 인해 학교 배정이 변경되는 결정이 이루어질 시

절차적 보호 통지는 미국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USDE)에서 작성한 견본 양식을 기초로 했습니다. 뉴욕주 요건 관련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  
뉴욕주 교육부  
특수교육청

## 차례

|                         |    |
|-------------------------|----|
| 일반 정보.....              | 1  |
| 사전 서면 통지(권고 사항 통지)..... | 1  |
| 모국어 .....               | 2  |
| 이메일 .....               | 2  |
| 부모 동의 - 정의 .....        | 2  |
| 부모 동의.....              | 3  |
| 독립적 교육 평가 .....         | 6  |
| 정보 비밀 보장.....           | 8  |
| 정의 .....                | 8  |
| 개인 식별 정보.....           | 8  |
| 부모에 대한 통지 .....         | 8  |
| 열람권 .....               | 9  |
| 열람 기록.....              | 9  |
| 한 명 이상의 아동에 관한 기록 ..... | 9  |
| 정보의 유형 및 소재지 목록.....    | 10 |
| 수수료 .....               | 10 |
|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  | 10 |
| 심리 기회.....              | 10 |
| 심리 절차.....              | 10 |
| 심리 결과.....              | 11 |
| 개인 식별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11 |
| 보호 .....                | 11 |

|                                                 |    |
|-------------------------------------------------|----|
| 정보 파기 .....                                     | 12 |
| 분쟁 합의 방안 .....                                  | 12 |
| 중재 .....                                        | 13 |
| 주 민원 절차 .....                                   | 14 |
| 적법 절차 심리 민원과 주 민원 절차의 차이 .....                  | 14 |
| 주 민원 절차 확립 .....                                | 15 |
| 최소 주 민원 절차 .....                                | 15 |
| 민원 접수 .....                                     | 16 |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절차 .....                           | 18 |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                           | 18 |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                              | 18 |
| 견본 양식 .....                                     | 20 |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및 심리를 처리하는 동안 자녀의 학교 배정 (미결) ..... | 20 |
| 합의 과정 .....                                     | 21 |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심리 .....                           | 23 |
| 공정 적법 절차 심리 .....                               | 23 |
| 심리권 .....                                       | 24 |
| 신속 재심 및 구제 명령 .....                             | 25 |
| 이의 제기 .....                                     | 27 |
| 최종 판결, 이의 제기, 공정 재심 .....                       | 27 |
| 심리 및 재심의 기한 및 편의 .....                          | 28 |
|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민사소송 .....                  | 28 |
| 변호사 선임료 .....                                   | 29 |

|                                             |    |
|---------------------------------------------|----|
| 장애 아동 징계 절차.....                            | 31 |
| 교직원의 권한.....                                | 31 |
| 퇴교 징계로 인한 학교 배정의 변경 .....                   | 34 |
| 환경 결정.....                                  | 34 |
| 이의 제기.....                                  | 35 |
| 이의 제기 기간의 학교 배정.....                        | 36 |
|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아동의 보호.....    | 36 |
| 법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으로의 회부 및 해당 기관의 조치.....        | 37 |
| 공공 및 민간 혜택/보험 이용.....                       | 38 |
| 공공 보험 적용 장애 아동 .....                        | 38 |
| 민간 보험 적용 장애 아동 .....                        | 39 |
|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요건..... | 40 |
| 일반.....                                     | 40 |
| 참고 자료.....                                  | 41 |

## 일반 정보

### 사전 서면 통지(권고 사항 통지)

#### 34 CFR 300.503항, 8 NYCRR 200.5(a), (c)항

##### 통지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항상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1. 자녀에 대한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적 배정의 시작이나 변경 또는 자녀를 위한 FAPE를 제안할 시 또는
2. 자녀에 대한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적 배정의 시작이나 변경 또는 자녀를 위한 FAPE를 거부할 시

사전 서면 통지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교육구의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경우, 교육구는 그러한 동의를 요청하면서 통지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 통지의 내용

서면 통지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1. 교육구에서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
2. 교육구에서 해당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3. 교육구에서 해당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하기로 결정할 때 참고한 각각의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4.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의 파트 B에 명시된 절차적 보호 조항에 따라 학부모를 위한 보호 제도가 있다는 진술 추가
5. 교육구에서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가 평가에 대한 최초의 의뢰가 아닐 경우, 절차적 보호 통지에 대한 설명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
6. IDEA 파트 B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락할 방법에 대한 자료 포함
7. 자녀의 CSE 또는 CPSE에서 고려했던 다른 모든 방안과 그 방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 설명 및
8. 교육구에서 해당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기타 모든 이유 설명

#####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한 통지

통지는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서면 형식으로 작성됨은 물론,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학부모가 사용하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학부모가 사용하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이 문자 언어가 아닌 경우, 교육구에서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1. 통지를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으로 통역
2. 학부모가 통지의 내용을 이해 못
3. 위의 1과 2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거 존재

## 모국어

### 34 CFR 300.29항, 8 NYCRR 200.1(ff)항

모국어란 영어 능력 한계자에게 사용할 때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아동의 경우 부모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2. 자녀와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자녀에 대한 평가 포함) 시, 자녀가 가정 또는 학습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 또는 문자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은 해당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

## 이메일

### 34 CFR 300.505항, 8 NYCRR 200.5(a), (f), (i)항

교육구에서 부모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 서면 통지(권고 사항 통지)
2. 절차적 보호 통지 및
3. 적법 절차 민원 관련 통지

## 부모 동의 - 정의

### 34 CFR 300.9항, 8 NYCRR 200.1(l)항

#### 동의

동의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귀하가 동의할 조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을 통해 제공받았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조치를 이해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하며 이러한 동의는 해당 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공개될 기록과 기록 공개 대상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3. 귀하는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경우, 동의가 이루어진 후 철회될 때까지 발생한 조치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 부모 동의

### 34 CFR 300.300항, 8 NYCRR 200.5(a), (b)항

####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

표제 **부모 동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구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귀하에게 제공하고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귀하의 자녀가 IDEA의 파트 B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최초 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에서는 귀하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최초의 평가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초의 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귀하가 자녀를 위한 교육구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시작에 대해서도 동의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공립 학교에 등록되었거나 귀하가 자녀를 공립 학교에 등록시키고자 하며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거나 동의 제공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귀하의 자녀가 학령기에 해당할 경우 교육구에서는 중재 또는 적법 절차 민원, 합의 회의 및 공정 적법 절차 심리를 통해 귀하의 자녀에 대한 최초 평가를 추진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이는 의무 사항은 아님).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구에서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지 않으며 귀하의 자녀가 수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교육구는 귀하의 자녀를 찾고 확인하며 평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 주 내 피보호자에 대한 최초 평가에 적용되는 특수한 규칙

자녀가 주 내 피보호자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다음의 경우에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최초 평가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구에서 해당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 부모의 권리가 주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또는
3. 판사가 교육적 결정을 내리고 최초 평가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모 이외의 개인에게 부여한 경우

뉴욕주에서, 주 내 피보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21세 이하 아동 또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1.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 358-a항, 384항 또는 384-a항 또는 가정법원법(Family Court Act)의 제3조,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배정 또는 보호 구치되거나 사회보장서비스법의 383-c항, 384항 또는 384-b항에 따라 입양을 위해 보호 구치가 해제된 아동 또는 청소년
2. 사회복지부 장관(Commissioner of Social Services) 또는 아동 및 가족 복지부(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보호 관리를 받는 아동 또는 청소년
3. 사회보장서비스법의 398(1)항에 따른 극빈층 아동

## 서비스에 대한 부모 동의

교육구에서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게 최초로 제공하기 전에 정보에 근거한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교육구에서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게 최초로 제공하기 전에 정보에 근거한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가 자녀를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대한 동의 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그러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구에서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자녀의 CSE 또는 CPSE에 의해 권장됨)를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 또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적법 절차(예: 중재, 합의 회의 또는 공정 적법 절차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자녀 대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이러한 동의 제공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교육구에서 해당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1. 이러한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APE 제공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2.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회의를 열거나 귀하의 동의를 요청했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IEP를 귀하의 자녀에 대해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모 동의 철회

귀하가 교육구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철회(취소)한다고 교육구에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교육구는

1.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 또는 결정을 구하기 위한 적법 절차(예: 중재, 합의 회의 또는 공정 적법 절차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추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APE 제공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4. IEP 회의를 열거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추가 제공에 대한 IEP를 귀하의 자녀에 대해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5. 동의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는 참조를 삭제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평가에 대한 부모 동의

교육구에서는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의 자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정보에 근거한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교육구에서 귀하의 자녀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해 귀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 2. 귀하가 이에 답하지 않음.

귀하가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육구에서는 중재, 적법 절차 민원, 합의 회의 및 공정 적법 절차 심리를 통해 귀하의 자녀 대상 재평가 동의에 대한 귀하의 거부를 무효화하여 이러한 재평가를 추진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이는 의무 사항은 아님). 최초 평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구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IDEA의 파트 B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문서화

학교는 최초 평가와 재평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대한 부모 동의 및 최초 평가와 관련해 주 내 피보호자의 부모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교육구에서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전화 통화 내역이나 통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 기록
2. 부모에게 보낸 서신 사본 및 부모가 보낸 회신 및
3. 부모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과 해당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 보험 이용에 대한 부모 동의

표제 **공공 및 민간 혜택보험 이용**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교육구에서는 부모의 민간 또는 공공 보험금에 접근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모가 배정하거나 홈 스쿨링을 받는 학생에 대한 동의

귀하가 본인의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켰거나 자녀에게 홈 스쿨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최초 평가나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제공 요청에 답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에서는 동의 무효화 절차(예: 중재, 적법 절차 민원, 합의 회의 또는 공정 적법 절차 심리)를 진행할 수 없고 귀하의 자녀가 공정 서비스(부모가 배정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장애인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혜 대상이라고 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 동의 요건

귀하의 동의는 교육구에서 다음을 실시하기 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자녀에 대한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서 기존 데이터 검토 또는
2. 모든 아동 대상의 테스트 또는 기타 평가를 자녀에게 실시, 해당 테스트나 평가 전에 모든 아동의 모든 부모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교육구에서는 특정 서비스나 활동 관련 동의에 대한 귀하의 거부를 이유로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에게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에서는 이러한 기타 서비스 및 활동 동의에 대한 귀하의 거부를 이유로 귀하의 자녀가 FAPE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독립적 교육 평가

### 34 CFR 300.502항; 8 NYCRR 200.5(g)항

#### 일반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귀하는 해당 교육구에서 제공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 대한 독립적 교육 평가(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s, 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IEE를 요청할 경우, 교육구에서는 IEE를 받을 수 있는 곳 및 IEE에 적용되는 교육구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정의

**독립적 교육 평가**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구의 소속이 아닌 자격 있는 검사 담당자가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공공 지출**은 각각의 주가 해당 주에서 이용 가능한 주, 지역, 연방 및 민간 지원 출처를 통해 IDEA의 파트 B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IDEA 파트 B 조항에 따라 교육구에서 평가 비용 전액을 지불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귀하에게 평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 부모가 공공 지출을 통해 평가를 진행할 권리

귀하는 교육구에서 실시하는 자녀 대상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조건 하에 자녀에 대한 IEE를 공공 지출을 통해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귀하가 자녀에 대한 IEE를 공공 지출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경우, 교육구에서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a)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구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적절함을 입증하기 위해 적법 절차 민원을 제출하여 심리를 요청하거나 또는(b) 귀하가 자녀에 대해 받은 평가가 교육구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심리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공 지출을 통해 IEE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육구에서 심리를 요청하고 교육구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가 적절하다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경우에도, 귀하는 IEE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공 지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자녀에 대한 IEE를 요청할 경우, 교육구에서는 귀하가 교육구에서 실시한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에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교육구의 자녀 평가 결과에 항변하는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공공 지출로 자녀의 IEE를 실시하거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자녀 평가를 실행할 때마다 부모는 공공 지출로 단 한 번 IEE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주도 평가

부모가 공공 지출로 자녀의 IEE를 실시하거나 자비로 실시한 자녀의 평가 결과를 교육구에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평가가 IEE에 대한 교육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구는 아동에 대한 FAPE 제공 관련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2. 부모 또는 교육구는 아동에 관한 적법 절차 심리에서 평가 결과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정 심의관에 의한 평가 요청

공정 심의관이 적법 절차 심리의 일환으로 아동의 IEE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비용은 공공 지출로 부담해야 합니다.

### 교육구 기준

공공 지출로 IEE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 장소, 평가자 자격 등의 평가 실시 기준은 교육구의 최초 평가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러한 기준이 IEE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일치하는 수준까지)과 동일해야 합니다.

상기 기술한 기준을 제외하고, 교육구에서는 공공 지출로 IEE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특정 조건이나 기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정보 비밀 보장

### 정의

#### 34 CFR 300.611항

표제 정보 비밀 보장에 사용된 용어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란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정보에서 개인 신원 부분을 물리적으로 파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록**이란 34 CFR 파트 99(1974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1232g(FERPA)의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 기록"의 정의에 해당되는 유형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참여 기관**이란 IDEA 파트 B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 또는 해당 정보에서 입수한 내용을 수집, 보관 또는 이용하는 교육구, 기관, 조직을 의미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

#### 34 CFR 300.32항, 8 NYCRR 200.5(e)항

**개인 식별 정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a) 자녀 이름, 부모 이름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 이름
- (b) 자녀 주소
- (c) 자녀의 사회 보장 번호나 학생 번호 등 개인 신원 또는
- (d) 아동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적 특징 또는 기타 정보

### 부모에 대한 통지

#### 34 CFR 300.612항

뉴욕주 교육부(NYSED)와 교육구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해당 정보의 비밀 보장에 관해 확실히 알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적절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1. 통지가 주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범위에 관한 설명
2. 개인 식별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 아동,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 정보 수집에 사용하는 방법(정보를 수집한 출처 등), 정보의 용도에 관한 설명
3. 개인 식별 정보의 보관, 제3자 제공, 보유, 파기 등과 관련하여 참여 기관이 준수해야 할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요약 및

4. 정보에 대한 학부모와 아동의 모든 권리(예: FERPA, 34 CFR 파트 99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권리 등)에 관한 설명

주요 신원 확인, 소재지 파악, 평가 활동("아동 찾기") 전에, 학부모에게 이러한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충분한 부수를 발행하는 신문, 기타 매체 또는 둘 다에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찾고 확인 및 평가하고자 한다는 통지를 게재하거나 발표해야 합니다.

## 열람권

### 34 CFR 300.613항, 8 NYCRR 200.2(b)(6)항, 200.5(d)(6)항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에 따라 교육구에서 수집, 보관 또는 이용하는 자녀에 관한 교육 기록을 학부모가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은 IEP 관련 회의 또는 공정 적법 절차 심리(합의 회의 또는 징계 심리 포함)가 열리기 전에, 불필요한 지연 없이 요청 후 45일 이내에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을 검사 및 검토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기록의 설명, 해석에 대한 합리적 요청에 대해 참여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권리
2. 기록의 사본을 받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검사 및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 기관이 기록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및
3. 대리인이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하게 할 권리

후견인 직무, 별거 또는 이혼과 같은 사안에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학부모에 권한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 기관은 학부모에게 자녀 관련 기록을 검사,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 열람 기록

### 34 CFR 300.614항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이용하는 교육 기록을 열람한 당사자 정보(이름, 열람한 날짜, 기록을 이용하도록 허락받은 용도 등)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부모 및 참여 기관의 인가 직원에 의한 열람은 제외).

## 한 명 이상의 아동에 관한 기록

### 34 CFR 300.615항

교육 기록에 한 명 이상의 아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관한 정보만을 검사 및 검토하거나 특정 정보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의 유형 및 소재지 목록

---

### 34 CFR 300.616항

요청 시, 각 참여 기관은 기관이 수집, 보관 또는 이용하는 교육 기록의 유형과 소재지 목록을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수수료

---

### 34 CFR 300.617항

각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에 따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기록 사본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기록 검사 및 검토에 대한 부모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참여 기관은 IDEA 파트 B에 따라 정보를 조사하거나 검색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

### 34 CFR 300.618항

IDEA 파트 B에 따라 수집, 보관 또는 이용되는 자녀의 교육 기록상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를 관리하는 참여 기관에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요청을 접수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청에 따른 정보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이 정보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거부 결정을 통보하고 **심리 기회** 절차에 기술된 대로 해당 목적의 심리 요청 권리가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 심리 기회

---

### 34 CFR 300.619항

요청 시, 참여 기관은 자녀의 교육 기록상의 정보가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자녀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록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리 기회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심리 절차

---

### 34 CFR 300.621항

교육 기록상의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리는 FERPA 하의 심리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 심리 결과

### 34 CFR 300.620항

심리 결과, 참여 기관에서 기록상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정한 경우, 참여 기관은 그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심리 결과, 참여 기관에서 기록상의 정보가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자녀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학부모는 참여 기관에서 자체 보관 중인 자녀의 기록에 해당 정보에 관한 의견이나 해당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삽입할 권리가 있으며, 참여 기관에서는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녀의 기록에 삽입하는 해당 설명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1. 참여 기관에서 해당 기록 또는 문제시되는 정보를 보관하는 한, 이 설명도 기록의 일부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2. 참여 기관에서 자녀의 기록 또는 문제시되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명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개인 식별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34 CFR 300.622항, 8 NYCRR 200.5(b)항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FERPA에 따라 부모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참여 기관의 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IDEA 파트 B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 기관의 직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환교육 지원을 제공하거나 해당 지원 대금을 결제하는 참여 기관의 직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 부모 동의 또는 주법에 따라 성인(18세)이 된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 거주 지역의 교육구에 위치해 있지 않은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진학할 예정인 경우, 자녀의 개인 식별 정보를 사립학교 소재 교육구 직원과 부모 거주 지역 교육구 직원 간에 공유하기 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보호

### 34 CFR 300.623항

각 참여 기관은 수집, 보관, 제공,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에서 직원 한 명이 개인 식별 정보의 비밀 보장을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모든 개인은 IDEA 파트 B 및 FERPA에 따라 뉴욕주 비밀 보장 정책 및 절차에 대한 훈련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은 현재 개인 식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관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일반 대중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 정보 파기

### 34 CFR 300.624항

수집, 보관 또는 이용 중인 개인 식별 정보가 자녀의 교육 서비스 제공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에서는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년, 출석 기록, 이수 수업, 이수 학년, 이수 연도 기록은 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 분쟁 합의 방안

적법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적 배정 또는 FAPE 제공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구 간에 발생하는 우려 또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수 교육 분쟁 합의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재
- 주 민원 및
- 적법 절차 심리(공정 심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교육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덜 적대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는 위에 나열되고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분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거나 학교 행정부 또는 CPSE/CSE와 회의를 요청하여 자녀의 교육에 대한 우려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중재

### 34 CFR 300.506항, 8 NYCRR 200.5(h)항

#### 일반

교육구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이전에 발생하는 사안 등 IDEA 파트 B의 모든 사안과 관련된 양측의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 민원을 접수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IDEA 파트 B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가 제공됩니다.

#### 요건

해당 절차는 중재 과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1. 학부모와 교육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 중재 과정은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IDEA 파트 B에 명시된 학부모의 다른 권리를 거부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3. 중재는 효과적인 중재 기술을 훈련받고 자격 요건을 갖춘 공정한 중재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구에서는 중재 과정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부모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공정한 인사와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사회 분쟁 해결 센터(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CDRC)와 계약을 체결한 자 **및**
2. 부모에게 중재 과정의 혜택을 설명하고 이용을 권장하는 자

뉴욕주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하고 CDRC에서 훈련받은 자격 요건을 갖춘 중재자를 이용합니다. 중재자는 CDRC에서 무작위, 로테이션 또는 기타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중재 주선

중재는 CDRC 및 교육구를 통해 주선합니다. 주정부에서 회의 비용 등 중재 과정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중재 과정에서 각 회의의 일정은 시의적절하게 정해야 하며 학부모와 교육구에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중재 합의

학부모와 교육구가 중재 과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양측은 합의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재 과정에서 나온 모든 논의는 비밀이 보장되고 후속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2. 교육구에 대해 구속력 있는 권한을 지닌 교육구 대표와 학부모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중재 합의서는 모든 주 관할 법원(주법에 따라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서 강제력을 갖습니다.

중재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은 비밀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적법 절차 심리 또는 IDEA의 파트 B에 따라 지원을 받는 주의 연방 또는 주 법원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중재자의 공정성

중재자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주교육기관 또는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에 개입하는 학교 직원일 수 없습니다. 또한
2. 중재자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중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주정부기관 또는 교육구에서 중재자 역할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구나 주정부기관의 직원인 것은 아닙니다.

## 주 민원 절차

### 적법 절차 심리 민원과 주 민원 절차의 차이

IDEA 파트 B 규정은 주 민원과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심리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제시합니다.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 혹은 조직은 교육구, NYSED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한 파트 B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주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교육구만이 장애 아동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학교 배정의 개시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 또는 거부, 혹은 자녀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별도로 연장되지 않는 한, NYSED 직원은 주 민원을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공정 적법 절차 심의관은 (합의 회의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심리하고, (본 문서의 합의 과정 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합의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미취학 학생의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단, 심의관이 일정 기간의 기한 연장을 승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기한 연장은 부모 또는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 민원,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합의, 심리 절차는 다음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 주 민원 절차 확립

### 34 CFR 300.151항, 8 NYCRR 200.5(I)항

#### 일반

NYSED는 다음의 절차를 서면으로 확립해 놓아야 합니다.

1. 다른 주의 주민 또는 기관이 접수한 민원 등 민원 해결 절차
2. NYSED 민원 접수 절차. 주 민원 송부 주소:  
뉴욕주 교육부  
Office of Special Education  
89 Washington Avenue, Room 309 EB  
Albany, NY 12234
3. 주 민원 절차를 학부모 및 기타 이해관계자(학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옹호 단체, 자립 생활 센터, 기타 해당 조직 등)에게 널리 홍보하는 절차

#### 적절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구제책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NYSED에서 판정한 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NYSED는 다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1.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정 조치 등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실패 문제 및
2.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향후 적절한 서비스 제공

## 최소 주 민원 절차

### 34 CFR 300.152항, 8 NYCRR 200.5(I)항

#### 시간제한, 최소 절차

NYSED는 민원이 접수된 후 다음을 실행하도록 주 민원 절차에 60일의 기한을 두어야 합니다.

1. NYSED에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립적 현장 조사 실시
2. 민원인(민원을 제출한 사람)에게 민원 진술에 관한 추가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 제공
3.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최소한(a) 기관의 재량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도록 제안 및 (b) 민원을 접수한 학부모와 해당 기관이 중재에 참여하도록 자발적으로 합의할 기회 등 민원에 대처할 기회 제공
4.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IDEA 파트 B의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결정 및
5. 민원의 각 주장을 검토하고(a) 진상조사와 결론 및 (b) NYSED 최종 판결 사유 등을 기술한 서면 판결을 민원인에게 제공

## 기한 연장, 최종 판결, 시행

상기 기술한 NYSED의 절차는 또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60일간 기한 연장은(a) 특정 주 민원과 관련된 예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b) 학부모, 교육구 또는 관련 공공 기관이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한 연장에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합니다.
2. 필요한 경우 NYSED 최종 판결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a) 기술 지원 활동, (b) 협상 및 (c) 규제 준수를 위한 시정 조치 등의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민원에 대해 내려진 NYSED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와 부모는 민원에서 제기된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심리를 개시할 권리가 있지만, 공정 심리는 주 민원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주 민원 및 적법 절차 심리

서면으로 접수한 주 민원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절차에 기술된 적법 절차 심리의 안건이기도 하거나, 해당 주 민원의 여러 주장에 적법 절차 심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NYSED에서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에서 다루는 주 민원 또는 주 민원의 일부를 보류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리에 해당하지 않는 주 민원의 문제는 상기 기술한 기한과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동일 당사자(학부모 및 교육구)가 연루된 적법 절차 심리에서 주 민원에 제기된 문제를 이전에 판결한 적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해당 문제에 구속력을 가지며, NYSED는 민원인에게 해당 판결에 구속력이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구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심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은 NYSED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민원 접수

### 34 CFR 300.153항, 8 NYCRR 200.5(I)항

조직 또는 개인은 상기 기술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주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교육구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IDEA 파트 B의 요건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술
2. 진술의 토대가 되는 사실
3. 민원인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및
4. 특정 아동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내용
  - (a) 아동의 이름 및 아동 거주지 주소
  - (b)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명
  - (c)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아동의 연락 가능한 정보 및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명

(d) 문제와 관련된 사실 등 아동 문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 **및**

(e) 민원 접수 시점에 민원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

민원은 **주 민원 절차 확립** 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사항에 관해 제기해야 합니다.

주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인은 **NYSED**에 민원을 접수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에 민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절차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 34 CFR 300.507항, 8 NYCRR 200.5(i)항, 200.5(j)항

##### 일반

부모 또는 교육구는 자녀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교육적 배정의 개시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 또는 거부, 혹은 자녀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은 부모 또는 교육구가 민원의 토대가 된 문제 행동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사항에 관해 제기해야 합니다.

부모가 다음의 이유로 기한 내에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수 없었던 경우, 상기 기한은 부모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교육구에서 민원에 명시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명확하게 잘못 전달한 경우 또는
2. IDEA 파트 B에 따라 교육구에서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했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부모를 위한 정보

부모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부모나 교육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교육구에서는 부모에게 지역 내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의 법률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안내해야 합니다.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 34 CFR 300.508항, 8 NYCRR 200.5(i), (j)항

##### 일반

심리를 요청하려면 부모 또는 교육구(또는 양측의 변호사)는 상대방에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민원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그 내용은 비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모 혹은 교육구 중 누가 민원을 접수하든 NYSED에도 민원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민원의 내용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아동 이름
2. 아동 거주지 주소
3.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명

4.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아동의 연락처 정보 및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명
5. 문제와 관련된 사실 등 제안 또는 거절한 조치와 관련된 아동 문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 **및**
6. 당시 부모 또는 교육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심리의 사전 통지 필수

부모 또는 교육구(또는 양측 변호사)는 상기 기술한 정보를 포함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충분한 민원 내용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진행되려면, 민원의 내용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민원을 받은 당사자(부모 또는 교육구)가 민원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의관과 상대방에게 해당 민원이 상기 기술한 내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은 충분한 것(상기 기술한 내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정 심의관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받은 당사자(부모 또는 교육구)로부터 민원이 불충분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해당 민원의 상기 기술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여 부모와 교육구 모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민원 변경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민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민원 변경을 서면으로 승인하고 아래 설명된 합의 회의를 통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해결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또는**
  2. 적법 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전 최대 **5일** 이내에 심의관이 민원 변경을 허락하는 경우
- 민원인(부모 또는 교육구)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변경하는 경우, 합의 회의(민원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와 합의 기간(민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일정은 변경된 민원 접수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지역 교육 기관(Local Educational Agency, LEA) 또는 교육구의 적법 절차 민원 대응

**사전 서면 통지** 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구에서 학부모에게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제기된 주요 사안에 관한 사전 서면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받고 **10일** 이내에 부모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1. 교육구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언급된 해당 조치의 이행을 제안 또는 거부한 이유에 관한 설명
2. 자녀의 **CSE** 또는 **CPSE**에서 고려했던 다른 방안과 그 방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 설명
3. 교육구에서 조치에 대한 제안 또는 거부의 근거로 삼은 각 평가 절차, 검증, 기록 또는 보고서에 관한 설명 **및**
4. 교육구에서 제안 또는 거부한 조치와 관련된 다른 요인에 관한 설명

상기 1~4항의 항목에 있는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교육구에서는 학부모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바로 앞 하위 절인 **지역 교육 기관(LEA) 또는 교육구의 적법 절차 민원 대응** 절에서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받은 상대방은 민원을 받고 10일 이내에 민원에 명시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답변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 견본 양식

### 34 CFR 300.509항

NYSED는 학부모가 주 민원과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도록 돕는 견본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NYSED 또는 교육구에서는 학부모의 견본 양식 이용을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나 주 민원을 접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학부모는 주 민원 견본 양식 또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 견본 양식이나 적절한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YSED의 뉴욕주 특수 교육 관련 양식 및 통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사본은 교육구에서 제공받거나 NYSED 특수 교육 사무소(518-473-2878)로 연락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및 심리를 처리하는 동안 자녀의 학교 배정 (미결)

### 34 CFR 300.518항, 8 NYCRR 200.5(m)항

**장애 아동 징계 절차** 절에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후 합의 과정을 진행하는 기간이나 공정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법정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학부모와 교육구 또는 학부모와 주 정부 조사관(State Review Officer, SRO)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녀는 현재 배정된 학교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소송이 최초 평가를 위한 동의와 관련된 소송인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최초의 공립학교 입학 신청과 관련된 경우, 모든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의 동의 하에 아동은 일반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됩니다.

미취학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았고 이제 취학 연령인 아동이 심리 및 이의 제기 중일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만약 승인받은 취학 연령 대상 특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면, 동일한 프로그램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지 않은 경우, 만약 부모와 교육구가 동의한다면 심리 또는 이의 제기 기간에 자녀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IDEA 파트 C(조기 개입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다 IDEA 파트 B(미취학 특수 교육 서비스)로 전환할 아동과 3세가 되어 파트 C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아동의 IDEA 파트 B 서비스 최초 신청과 관련된 경우, 교육구는 아동이 받아온 파트 C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이 IDEA 파트 B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모도 아동이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데 동의하는 경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교육구는 분쟁의 대상이 아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부모와 교육구가 동의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았고 미취학 연령이 아닌 아동이 심리 및 이의 제기 중일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만약 미취학 연령 대상 프로그램으로도 승인을 받았다면,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

### 34 CFR 300.510항, 8 NYCRR 200.5(j)항

#### 합의 회의

학부모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적법 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전, 교육구에서는 학부모와 민원에 명시된 사안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CSE 또는 CPSE 관련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1. 교육구를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교육구 대표가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2. 학부모가 변호사를 동반하는 때 외에는 교육구의 변호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구는 회의에 참석할 CSE 또는 CPSE 관련 위원을 결정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학부모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과 민원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논의하여 교육구에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합의 회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학부모와 교육구가 회의를 생략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2. 학부모와 교육구가 중재 절차에 기술한 중재 과정을 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 교육구는 학부모가 합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합의 기간

교육구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받은 후 30일 이내(합의 과정에 대한 기간)에 학부모가 만족할 정도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적법 절차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기한은 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45일, 미취학 학생의 경우 30일이 주어지며 이 기한은 30일의 합의 기간 종료 이후 시작되지만 아래와 같이 30일의 합의 기간을 변경하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회의를 생략하기로 또는 중재 과정을 이용하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합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합의 과정과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을 연기합니다.** 학부모가 합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정 심의관이 적법 절차 심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문서화한 후에도 교육구에서 학부모의 합의 회의 참석을 종용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는 합의 기간 30일 종료 시점에 공정 심의관에게 학부모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문서화로 다음과 같은 항목 등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려는 교육구의 시도에 대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전화 통화 내역이나 통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 기록
2. 부모에게 보낸 서신 사본 및 부모가 보낸 회신 및
3. 부모의 자택 또는 직장 방문과 해당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 기록

교육구에서 학부모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합의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또는** 합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는 심의관에게 취학 연령 학생을 위한 45일(또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30일)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의 시작을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0일의 합의 기간 변경

학부모와 교육구가 합의 회의를 생략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취학 연령 학생을 위한 45일(또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30일)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이 익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재 또는 합의 회의가 시작된 후, 그리고 합의 기간 30일이 종료되기 전에 학부모와 교육구가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취학 연령 학생을 위한 45일 또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30일의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이 익일부터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중재 과정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합의 기간 30일 종료 시점에 양측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중재를 계속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또는 교육구 중 일방이 중재 과정을 철회하는 경우, 45일 또는 30일의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이 익일부터 시작됩니다.

### 서면 합의

합의 회의를 통해 분쟁 해결에 이른 경우, 학부모와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합의서에는 교육구에 대해 구속력 있는 권한을 지닌 교육구 대표와 학부모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 합의서는 모든 주 관할 법원(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서 강제력을 갖습니다.

### 합의 검토 기간

학부모와 교육구가 합의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 어느 일방(학부모 또는 교육구)이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합의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심리

### 공정 적법 절차 심리

#### 34 CFR 300.511항, 8 NYCRR 200.1(x), 200.5(i), (j)항

##### 일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에 연루된 부모 또는 교육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과 **합의 과정절**에 기술된 공정 적법 절차 심리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교육구는 로테이션 목록에서 공정 심의관을 임명합니다. 공정 심의관이 공정 심리를 소집합니다.

##### 공정 심의관(Impartial hearing officer, IHO)

공정 심의관(IHO)은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주교육기관 또는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에 개입하는 학교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의관 역할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의 직원인 것은 아닙니다.
2. 심리에서 심의관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3. IDEA의 조항, IDEA 관련 연방/뉴욕주 규정, 연방/주 법원의 IDEA에 대한 법적 해석에 정통하고 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4. 심리를 진행하며 적합한 표준 법률 관행과 일치하는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교육구에서는 IHO 역할의 담당자 명단을 보관해야 합니다.

##### 적법 절차 심리의 안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에 언급하지 않은 사안을 심리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심리 요청 기한

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민원에 언급된 사안에 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의 공정 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 기한의 예외

학부모가 다음의 이유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수 없었던 경우, 상기 기한은 학부모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교육구에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 또는 사안을 해결했다고 명확하게 잘못 전달한 경우 **또는**
2. IDEA 파트 B에 따라 교육구에서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했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심리권

### 34 CFR 300.512항, 8 NYCRR 200.5(j)항

#### 일반

적법 절차 심리(징계 절차 관련 심리 포함) 당사자나 **판결 이의 제기의 공정 재심** 절차에 기술된 이의 제기 당사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1. 변호사 및/또는 장애 아동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또는 훈련을 받은 개인을 대동하고 그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
2. 증거 제출, 대질, 반대 심문의 권리 및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권리
3. 심리가 열리기 최소 5영업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에서 제출하지 못하게 할 권리
4. 서면 또는 원하는 경우 전자 형태로 심리 내용의 기록 전문을 제공받을 권리 **및**
5. 서면 또는 원하는 경우 전자 형태로 진상조사 결과 및 판결을 입수할 권리

#### 정보의 추가 공개

적법 절차 심리가 열리기 최소 5영업일 전까지 학부모와 교육구는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당일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와 이에 기반한 권고 사항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IHO는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심리에 관련 평가 자료 또는 권고 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심리 중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1. 자녀를 참석시킬 권리
2. 일반 대중에게 심리를 공개할 권리
3. 심리 기록, 진상조사 결과, 판결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권리, **또한**
4. 필요한 경우 청각장애인 통역사 또는 학부모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통역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

### 34 CFR 300.513항, 8 NYCRR 200.5(j)항

#### 심의관의 판결

아동이 FAPE를 받았는지에 관한 공정 심의관의 판결은 실질적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정 심의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아동이 FAPE를 받지 않았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1. 절차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아동이 FAPE를 받을 권리를 방해받은 경우
2. 절차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학부모가 자녀의 FAPE 제공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받은 경우, 또는
3. 절차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교육적 혜택을 박탈당한 경우

### 해석 조항

상기 기술한 어떠한 조항도 IHO가 교육구에 IDEA 파트 B(34 CFR 300.500~300.536항)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 절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석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견본 양식, 합의 과정, 공정 적법 절차 심리, 심리권, 심리 판결**(34 CFR 300.507~300.513항) 절에 명시된 어떠한 조항도 SRO와 적법 절차 심리 판결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이의 제기 - 최종 판결 절 참조).

###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별도 요청

IDEA 파트 B(34 CFR 300.500~300.536항)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적 보호 절에 명시된 어떠한 조항도 학부모가 이미 접수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과 전혀 별개인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신속 재심 및 구제 명령

### 8 NYCRR 200.5(j), (o)항

#### 일반

196일 이상 IHO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적법 절차 민원에 대한 구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IHO의 즉각적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검토 요청을 받으면 1영업일 이내에 IHO를 임명해야 합니다. 임명한 IHO는 학부모가 제출한 구제 명령에 따라 학생을 위한 적절한 개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찾는 명령을 내리거나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통지

각 교육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96일** 이내에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작성한 시점 기준으로 **해당 196일이 경과한 이후 최대 5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속 검토 요청 전 고려할 사항

1. 신속 검토는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신속 검토 요청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2. 장애 학생으로 최초 신원 확인 또는 징후 판정에 관한 민원의 경우 신속 검토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학부모는 신속 검토가 **공정 적법 절차 심리, 심리권 및 심리 판결**(34 CFR 300.507~300.513항) **절에 기술된 공정 적법 절차 심리 대신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4. 학부모는 검토가 **전적으로** 서면 기록과 이메일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5. 신속 구제를 요청한 최초 시점부터 공정 심의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은 최대 **21**영업일 이내여야 합니다.
6. 공정 심의관의 최종 결정은 **(a)** 학부모가 제안한 구제 명령, **(b)** 학부모가 제안하고 공정 심의관이 기록에 따라 수정한 구제 명령 또는 **(c)** 기록에 따라 구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 중 하나여야 합니다.
7. 학부모 또는 교육구 중 일방이 공정 심의관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정 심의관이 학부모가 제안한 구제를 명령했고 이러한 최종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주 정부 조사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정부 조사관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I의 제기

### 최종 판결, 이의 제기, 공정 재심

#### 34 CFR 300.514항, 8NYCRR 200.5(k)항

##### 최종 심리 판결

관련된 당사자(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해당 결정에 대해 NYSED 주 정부 조사관에 이의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 심리(징계 절차 관련 심리 포함)에서 내린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 IHO 판결에 대한 주 수준 이의 제기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주 정부 조사관(State Review Officer, SRO)에게 IHO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재심 신청이라 함)를 제외하고, IHO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SRO에게 IHO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재심요청의사 통지서(Notice of Intention to Seek Review)(양식 A)를 **IHO 결정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교육구에 접수해야 합니다. 재심요청 통지서(양식 B)와 재심 신청서는 **IHO 결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교육구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SRO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1.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정당한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적시에 요청하는 경우, SRO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30일 이내에 또는 상기 규정에 따라 SRO가 연장한 기간 내에, 사실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을 귀하나 귀하의 변호사 및 교육 위원회(board of education, BOE)에 서면으로, 또는 귀하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로 송부해 드립니다.

SRO에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규칙은 <http://www.sro.nysed.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SRO는 이의가 제기된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에 대한 공정 재심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심 담당관에게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1. 전체 심리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심리 절차가 적법 절차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심리를 여는 경우, 상기 **심리권** 절에 기술한 심리권이 적용됩니다.
4. 재심 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양측 당사자에게 구두 및/또는 서면 변론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5. 재심을 완료한 후 독자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6. 학부모와 교육구에 서면 또는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전자 형태로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을 제공해야 합니다.

## 최종 재심 판결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아래 기술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SRO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 심리 및 재심의 기한 및 편의

### 34 CFR 300.515항, 8 NYCRR 200.5(j)항, 200.16(h)항

교육구에서는 30일의 합의 회의 기간이 종료된 후 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45일, 미취학 학생의 경우 30일 이내에 또는 30일의 합의 기간 변경 전에 기술된 변경 기간이 종료된 후 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45일, 미취학 학생의 경우 30일 이내에 다음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심리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2. 학부모와 교육구에 판결문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SRO는 재심 신청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또는 SRO가 연장한 기간 내에 다음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재심의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2. 학부모와 교육구에 판결문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일정 기간의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IHO 또는 SRO는 상기 기술한 기한(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45일, 미취학 학생의 경우 30일의 심리 판결 기한과 30일의 SRO 판결 기한)에 따라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 변론을 포함하는 각 심리 및 재심은 학부모와 자녀의 편의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장소와 시간에 열려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민사소송

### 34 CFR 300.516항, 8 NYCRR 200.5(k)항

#### 일반

주정부 재심의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적법 절차 심리(징계 절차 관련 심리 포함)의 안건이었던 사안에 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분쟁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 관할 법원(이러한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 법원) 또는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교육구)는 SRO의 판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추가 절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다음 역할을 합니다.

1. 행정 재판의 기록을 수령합니다.
2. 학부모 또는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 진술을 듣습니다. 또한
3.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 조치를 부여합니다.

### 지방 법원의 재판권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분쟁의 규모에 관계없이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판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 해석의 규칙

IDEA 파트 B의 어떠한 조항도 미헌법,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1973년 재활법 5편(Title V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504조) 또는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법에 명시된 권리, 절차, 구제 조치를 제한 또는 제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DEA 파트 B에도 명시된 구제 조치를 제공받기 위해 상기 법안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는 IDEA 파트 B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때 요구되는 수준으로 상기 기술한 적법 절차를 모두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학부모가 IDEA에 명시된 구제 조치와 중복되는 다른 법안에 명시된 구제를 받고자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법안에 명시된 구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 직행하기 전에 IDEA에 명시된 행정 구제 조치(예: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합의 회의, 공정 적법 절차 심리)를 먼저 이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변호사 선임료

### 34 CFR 300.517항

#### 일반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재판에서 학부모가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학부모에게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재판에서 법원이 재량에 따라 승소한 교육구 또는 NYSED에 학부모의 변호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학부모의 변호사가 (a) 법원이 판단하기에 경솔하고 불합리하며 근거 없는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b) 명확히 경솔하고 불합리하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 판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며 또는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재판에서 법원이 재량에 따라 승소한 주교육기관(State Educational Agency, SEA) 또는 교육구에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변호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적법 절차 심리 또는 이후 법원 소송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또는 소송이나 재판 비용의 불필요한 증가와 같은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입니다.

## 비용 제공

법원은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1. 비용은 소송 또는 심리가 시작된 지역사회에서 해당 종류와 품질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요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제공할 비용 계산에 보너스 또는 승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음의 경우,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재판에서 서면 합의를 제안한 후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관련 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 a.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68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또는 적법 절차 심리 또는 주정부 재심의 경우 심리가 시작되기 10일 이상 이전에 합의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 b. 합의 제안을 1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 또한
  - c. 법원 또는 행정 심리관이 학부모에게 최종적으로 부여된 구제 조치가 합의 제안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승소하고 합의 제안을 거절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 소송 또는 법정 소송의 결과로 CSE 또는 CPSE 회의가 소집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회의의 관련 비용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 회의** 절에 기술된 합의 회의는 행정 심리 또는 법정 소송의 결과 소집된 회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료 제공을 위한 목적에서도 행정 심리 또는 법정 소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법원은 IDEA 파트 B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로 제공되는 금액을 삭감합니다.

1. 학부모 또는 그 변호사가 소송 또는 재판 과정에서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지급해야 할 승인된 변호사 선임료가 능력, 명성, 경력이 충분히 유사한 해당 지역의 변호사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의 시간당 평균 요율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소송 또는 재판의 성격에 비해 투자한 시간과 제공한 법률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또는
4. 학부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절에 기술된 적법 절차 민원 통지의 적합한 정보를 교육구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법원에서 주 또는 교육구가 소송 또는 재판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켰거나 IDEA 파트 B의 절차적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장애 아동 징계 절차

### 교직원의 권한

#### 34 CFR 300.530항, 8 NYCRR 201.2~201.7항

##### 사례별 판결

징계와 관련된 다음 요건에 따라 실행한 학교 배정에서의 변경이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교직원은 사례별로 특수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장애 학생 징계 절차는 교육법(Education Law) 3214조와 교육청장규정(Regulations of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 파트 201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아동을 정학 또는 퇴교시킬 권한을 갖지만, 해당 과정에서 학부모와 아동이 갖는 일부 권리도 있습니다.

#####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권리

1. 수업일 5일 이하의 정학 조치가 제안된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즉시 전화로 통보받고 24시간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통지에는 사건, 제안된 정학 조치, 아동의 권리를 기술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또한 자녀의 등교가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정학 조치 이전에 교장과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자녀의 등교가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비공식 회의는 정학 처리 후에 가능).
2. 연속 수업일 5일 초과 정학의 경우, 교장의 심리 기회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통지에는 조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하고 출두시킬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기술합니다.
3. 아동이 의무 취학 연령인 경우, 정학 또는 퇴교 기간의 첫 10일 동안 비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대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권리

비장애 아동에 취하는 조치와 같은 정도로, 교직원은 최대 연속 수업일 10일 동안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장애 아동을 현재 학교 배정에서 퇴교하고 아동의 CSE/CPSE가 결정하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 IAES)이나 기타 다른 환경으로 배정 또는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한 학년도에 별개의 비행 행동에 대해 연속 수업일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추가로 아동에게 퇴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퇴교 조치는 학교 배정의 변경(정의는 아래 퇴교 징계로 인한 학교 배정의 변경 참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 아동이 한 학년도에 총 수업일 10일 동안 현재 배정된 학교에서 퇴교당한 후 동일 학년도에 추가로 퇴교당하는 경우, 교육구에서는 그 기간 동안 서비스 질에 명시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추가 권한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아동의 장애에 따른 징후(다음의 **징후 판정** 참조)가 아니고 징계 상의 학교 배정 변경이 연속 **수업일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교직원들은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방식 및 기간의 징계 절차를 장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단, 교육구에서는 **서비스** 절에 기술된 서비스를 장애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의 CSE 또는 CPSE에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IAES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현재 배정받은 학교에서 퇴교당한 장애 아동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IAES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유사하게 퇴교 처분을 당한 비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한 학년도에 **수업일 10일 이하의 기간에** 현재 배정받은 학교에서 퇴교당한 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의무 취학 연령인 경우, 뉴욕주의 교육구에서는 한 학년도에 10일 미만으로 정학당한 장애 학생에게 대체 수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의무 취학 연령이 아닌 경우, 비장애 학생들에게 대체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장애 학생에게도 대체 수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년도의 정학 첫 10일 동안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요건은 비장애 학생에 대한 요건과 동일합니다. 뉴욕주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대체 수업은 일 2시간 이상(주 10시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대체 수업은 일 3시간 이상(주 15시간) 제공해야 합니다. 의무 취학 연령이 아닌 학생이 정학당한 경우, 교육구에서는 비장애 학생에게 대체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장애 학생에게 대체 수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일 10일 이상** 동안 현재 학교 배정에서 퇴교당한 장애 아동에게는 다음이 해당됩니다.

1. 일반 교과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교육 환경에서라도 교육 서비스를 계속하여 받고 아동의 IEP에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2. 적절한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FBA)와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고안된 행동 개입 계획(Behavioral Intervention Plan, BIP) 지원 및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 아동이 한 학년도에 **수업일 10일** 동안 현재 배정 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으며, **만약** 현재 퇴교 기간이 연속 **수업일 10일** 이하이고 **또한** 퇴교가 학교 배정의 변경(정의는 아래 참조)이 아닌 **경우라면**, 교직원들은 한 명 이상의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이 일반 교과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교육 환경에서라도 아동의 IEP에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퇴교 처분이 학교 배정의 변경인 경우(정의는 아래 참조), 아동의 CSE 또는 CPSE가 아동이 일반 교과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교육 환경에서라도 아동의 IEP에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 징후 판정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장애 아동의 배정을 변경하기로 결정(연속 수업일 10일 이하의 퇴교 처분과 학교 배정의 변경이 아닌 퇴교 처분의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교육구, 학부모, CSE/CPSE 관련 위원(학부모와 교육구가 결정)이 이러한 결정 후 수업일 10일 이내에 학생의 IEP, 교사 관찰 사항, 학부모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 등 학생 파일의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1.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직접적이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지 **또는**
2. 문제가 되는 행동이 교육구에서 아동의 IEP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직접적 결과인지

교육구, 학부모, 아동 CSE 또는 CPSE 관련 위원이 상기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다고 판정하는 경우, 문제 행동을 아동의 장애에 따른 징후로 판정해야 합니다.

교육구, 학부모, 아동 CSE 또는 CPSE 관련 위원이 문제가 되는 행동을 교육구에서 IEP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교육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행동이 아동의 장애에 따른 징후였는지에 대한 결정

교육구, 학부모, CSE 또는 CPSE 관련 위원이 문제 행동을 아동의 장애에 따른 징후로 판정하는 경우, CSE/CPSE는 다음 중 하나를 실시해야 합니다.

1. 학교 배정의 변경을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 교육구에서 FBA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실시하고 아동을 위한 BIP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는**
2. BIP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재검토하고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다음의 **특별 상황절**에서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는 문제 아동을 퇴교 조치한 원래 배정 학교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단 학부모와 교육구가 행동 조정 계획 수정의 일환으로 학교 배정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특별 상황

문제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 인한 징후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의 경우 교직원들은 최대 수업일 45일 동안 학생을 기존 학교에서 퇴교하여 IAES(아동의 CSE 또는 CPSE 결정에 따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아동이 학교에 무기(정의는 아래 참조)를 가져오거나 수업 중이나 교내에서 또는 NYSED/교육구의 관할권에 있는 학교 행사에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2. 아동이 수업 중이나 교내에서 또는 NYSED/교육구의 관할권에 있는 학교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약물(정의는 아래 참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고 규제 약물(정의는 아래 참조)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또는**
3. 아동이 수업 중이나 교내에서 또는 NYSED/교육구의 관할권에 있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 심각한 신체 상해(정의는 아래 참조)를 입힌 경우

## 정의

**규제 약물**은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12(c)조 202(c)항 스케줄 I, II, III, IV, V에 규정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불법 약물**은 규제 약물을 의미하지만, 허가받은 의료 서비스 전문가의 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소지/사용하거나 규제약물법 또는 연방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사용하는 규제 약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신체 상해**란 미법령(United States Code) 18편 1365조 (h)항 (3)에 명시된 "심각한 신체 상해"의 의미를 갖습니다.

**무기**란 미법령(United States Code) 18편 930조 (g)항 (2)에 명시된 "위험한 무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 통지

교육구에서 학생 행동 규범의 위반으로 인해 아동의 학교 배정을 변경하는 퇴교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 당일 학부모에 이를 통지(사전 서면 통지)하고 절차적 보호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퇴교 징계로 인한 학교 배정의 변경

### 34 CFR 300.536항, 8 NYCRR 201.2항

다음의 경우, 장애 아동을 현재 배정된 학교에서 퇴교시키는 것이 **학교 배정에서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1. 퇴교 기간이 연속 수업일 10일 이상인 경우, **또는**
2. 다음 사유로 인해 아동이 일정한 경향을 갖는 일련의 퇴교 조치를 당한 경우
  - a. 한 학년도에 퇴교 일수가 총 수업일 10일을 초과
  - b. 아동의 행동이 이전에 결과적으로 퇴교 조치를 받은 문제 행동과 실질적으로 유사, 또는
  - c. 각각의 퇴교 기간, 아동이 퇴교당한 총 시간, 짧은 기간 내 반복 퇴교 등과 같은 추가 요인

퇴교의 경향이 학교 배정에서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구에서 사례별로 결정하고,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적법 절차와 사법 재판을 통해 재심을 받게 됩니다.

## 환경 결정

### 34 CFR 300.531항, 8 NYCRR 201.10항

CSE 또는 CPSE는 학교 배정의 변경을 동반하는 퇴교 및 상기 **추가 권한**과 **특별 상황절**에 따른 퇴교에 대한 IAES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 34 CFR 300.532항, 8 NYCRR 201.11항

#### 일반

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상기 참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이 징계 조항에 따른 학교 배정에 관한 결정 또는
2. 상기 기술한 장애로 인한 징후 판정

아동을 현행 학교에 그대로 배정하는 경우 아동 자신 또는 다른 아동에 상해를 야기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면, 교육구에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상기 참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정 심의관의 권한

**공정 심의관** 절에 기술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심의관은 적법 절차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공정 심의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교 조치가 **교직원의 권한** 절에 명시된 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의 행동이 장애로 인한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장애 아동을 퇴교 조치한 이전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2. 아동을 현행 학교에 그대로 배정하는 경우 아동 자신 또는 다른 아동에 상해를 야기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45일** 동안 적절한 **IAES**로 장애 학생의 학교 배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장애 학생이 원래 배정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 아동 자신 또는 다른 아동에 상해를 야기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심리 절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이러한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때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절차,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심리, 판결 이의 제기, 공정 재심** 절에 기술된 요건을 충족하는 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교육구에서 신속 적법 절차 심리를 진행해야 해서 심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수업일 **20일** 이내에 심리를 열고 심리 후 수업일 **1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
2. 학부모와 교육구가 회의를 생략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또는 중재를 이용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합의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양측이 만족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다른 적법 절차 심리의 판결에 이의 제기(상기의 **이의 제기** 절 참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 적법 절차 심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기간의 학교 배정

### 34 CFR 300.533항, 8 NYCRR 201.10항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학부모 또는 교육구가 징계 문제와 관련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경우, 아동은 IHO의 판결이 날 때까지 또는 **교직원의 권한**절에 규정된 퇴교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IAES에 남아있어야 합니다(학부모와 NYSED/교육구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아동의 보호

### 34 CFR 300.534항, 8 NYCRR 201.5항

#### 일반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했으나 징계 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 교육구에서 아동이 장애 아동이라는 사실을 (아래 결정된 것처럼) 알고 있었던 경우, 아동은 이 통지에 기술된 모든 보호 조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징계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

다음의 경우, 징계 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 교육구에서 아동이 장애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학부모가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해당 교육 기관의 감독 또는 관리 직원, 혹은 아동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
2. 학부모가 IDEA 파트 B에 명시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평가를 요청한 경우 **또는**
3. 아동의 교사 또는 교육구의 다른 직원이 해당 아동이 보인 행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교육구의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다른 감독관에게 직접 표명한 경우

#### 예외

다음의 경우, 교육구에서 학생의 장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학부모가 자녀의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특수 교육 서비스를 거부했던 경우 **또는**
2. 평가 결과 해당 아동이 IDEA 파트 B에 명시된 장애 아동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

####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조건

아동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 교육구에서 **징계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 및 **예외**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동이 장애 아동임을 알지 못했던 경우, 아동은 비장애 학생이 유사한 행위를 범했을 때 적용받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징계를 받는 도중 아동에 대한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은 정학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퇴학 등 학교 당국에서 결정한 교육적 배정의 상태에 남아있게 됩니다.

교육구에서 실시한 평가 정보와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아동이 장애 아동으로 판정되는 경우, 교육구에서는 상기 기술한 징계 요건 등 IDEA 파트 B에 따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법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으로의 회부 및 해당 기관의 조치

### 34 CFR 300.535항

IDEA 파트 B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에서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해당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2. 주법 집행기관과 사법당국에서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연방법과 주법을 적용하여 집행 역할을 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 기록 제출

교육구에서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범죄를 신고받은 당국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특수 교육 기록과 징계 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 아동의 특수 교육 기록과 징계 기록 사본은 FERPA에서 허용하는 수준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및 민간 혜택/보험 이용

### 공공 보험 적용 장애 아동

#### 34 CFR 300.154(d)항, 8 NYCRR 200.5(b)(8)항

교육구에서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학부모 또는 아동의 공공복지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예: Medicaid)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교육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학부모 또는 아동의 공공 혜택 또는 보험에 처음으로 접근하기 전에 학부모의 서면 동의(표제 **부모 동의 - 정의** 절에 규정된 조항과 일치해야 함)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 학부모 또는 아동의 공공 혜택 또는 보험에 처음으로 접근하기 전과 그 이후 매년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를 통해 다음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 a) 학부모는 자녀의 FAPE를 제공받기 위해 공공 혜택에 가입하거나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 b) 학부모는 서비스를 청구할 때 발생하는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 결제 등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 c)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구는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의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평생 보장 범위 또는 다른 보험 혜택을 축소하게 되는 경우
    - 아동이 학교 밖에 있는 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가족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복지 혜택 또는 보험의 중지로 이어지는 경우
    - 총 의료 관련 지출에 따라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 d) 학부모가 공공 혜택 또는 보험의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모든 IEP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교육구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e) 학부모는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민간 보험 적용 장애 아동

### 34 CFR 300.154(e)항, 8 NYCRR 200.5(b)(9)항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모 동의- 정의**절에 규정된 조항과 일치하는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구는 민간 보험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학부모의 민간 보험금 이용을 제안할 때마다 다음이 적용됩니다.

-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 학부모가 교육구의 민간 보험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모든 필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교육구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부모가 복지 혜택 또는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결제해야 할 비용(예: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IDEA 파트 B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요건

### 일반

#### 34 CFR 300.148항

교육구에서 장애 아동에게 FAPE를 제공했음에도 학부모가 아동을 사립학교 또는 시설에 진학시키기로 선택한 경우, IDEA 파트 B에 따라 교육구는 장애 학생이 사립학교나 시설에서 받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등의 교육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4 CFR 300.131~300.144항에 따라 학부모가 아동을 사립학교에 진학시킨 경우, 사립학교가 소재한 교육구는 IDEA 파트 B 조항에 따른 해당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학생 그룹에 이 아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 진학에 따른 비용 상황

아동이 이전에 교육구 권한 하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학부모가 교육구의 동의 또는 추천 없이 아동을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 또는 IHO에서 학부모의 사립학교 등록 전에 교육구가 아동에게 시의적절한 FAPE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학교 진학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교육구에 사립학교 등록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IHO 또는 법원에서는 사립학교 진학이 NYSED 및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립학교 진학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환 한도

상기 기술한 상환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 또는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1. 만약(a)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퇴교시키기 전 참석했던 가장 최근 CSE/CPSE 회의에서 아동에게 FAPE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에서 제안한 학교 배정을 거부한다는 의사(우려 표명,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키겠다는 의사 등)를 CSE/CPSE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퇴교시키기 적어도 10영업일(공휴일과 겹친 영업일 포함) 전에 이러한 의사를 교육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공립학교에서 아동을 퇴교시키기 전 교육구에서 아동을 평가할 계획을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 목적 설명 등)했으나 학부모가 아동이 평가받게 하지 않은 경우, 또는
3. 법원에서 학부모의 행동을 불합리하다고 판결한 경우

그러나 상환 비용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1.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a) 학교가 학부모의 통지를 방해한 경우, (b) 학부모가 상기 기술한 통지의 책임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c) 상기 요건을 준수할 시 아동이 신체적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환 비용을 감액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2. 법원 또는 IHO의 재량에 따라 학부모가 의무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a) 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를 쓸 수 없는 경우, 또는 (b) 상기 여건을 준수할 시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 비용을 감액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자료

---

미국 교육부 - IDEA 사이트  
(미 연방규정(CFR) 파트 300 포함)

뉴욕주 교육부

NYSED 특수교육청

교육국장 규칙의 파트 200 및 201

특수 교육 질적 보장 지역 사무소  
(다음 페이지에서도 제공)

특수 교육 질적 보장 지역 사무소:

중부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Hughes State Office Building  
333 E. Washington Street, Suite 210  
Syracuse, NY 13202  
**(315) 428-4556**  
(315) 428-4555(팩스)

동부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89 Washington Avenue, Room 309 EB  
Albany, NY 12234  
**(518) 486-6366**  
(518) 473-5769(팩스)

허드슨 밸리

**Albany 지역**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89 Washington Avenue, Room 309 EB  
Albany, NY 12234  
**(518) 473-1185**  
(914) 402-2180(팩스)

**Peekskill 지역**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1 Park Place, 3<sup>rd</sup> Floor  
Peekskill, NY 10566  
**(914) 940-2900**  
(914) 402-2180(팩스)

뉴욕시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55 Hanson Place, Room 545  
Brooklyn, NY 11217-1580  
**(718) 722-4544**  
(718) 722-2032(팩스)

롱아일랜드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Perry B. Duryea, Jr. State Office Building  
Room # 2A-5  
Hauppauge, NY 11788  
**(631) 952-3352**  
(631) 952-3834(팩스)

서부

(NYS 시각장애학교)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2A Richmond Avenue  
Batavia, NY 14020  
**(585) 344-2002**  
(585) 344-2422(팩스)

비교육구 유닛

**Albany 지역**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89 Washington Avenue, Room 309 EB  
Albany, NY 12234  
**(518) 473-1185**  
(518) 402-3582(팩스)

**Peekskill 지역**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1 Park Place, 3<sup>rd</sup> Floor  
Peekskill, NY 10566  
**(914) 940-2900**  
(914) 402-2180(팩스)